

外國의 火焰瓶 規制에 關한 立法 現況

— 日本의 “火焰瓶 使用等の 處罰에 關한 法律”을 中心으로 —

沈 載 昇*

〈 目 次 〉

I. 序 言	III. 日本에서의 火焰瓶規制에 關한 法律制定經過
II. 日本에서의 火焰瓶規制에 關한 法律制定理由	가. 單一法 制定 輿論의 高潮
1. 火焰瓶 使用의 危險性	나. 法案의 提出 및 施行
가. 火焰瓶의 沿革	IV. 日本「火焰瓶의 使用등의 處罰에 關한 法律」逐條解說
나. 日本에서의 使用	V. 外國의 立法例
2. 火焰瓶에 對한 直接處罰規定의 未備	VI. 結 語
가. 治安當局의 對應	〈附錄〉 別表 및 參考資料
나. 法規補完의 動向	

I. 序 言

지난 1983年 12月 學園自律化 措置 以後 學內外 示威가 漸增하여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火焰瓶使用示威는 '84年 1,467회의 示威중 77회

* 治安本部 企劃部長

(328개 投擲), '85년 2,132 회의 示威중 210 회(9,040 개 投擲), '86년 2,201 회의 示威중 691 회(40,549개 投擲), '87년 12,957 회의 示威중 2,173회(71,868 개 投擲) 등으로 急增하였으며 '87년의 경우 '85년에 비하여 火焰瓶을 使用한 示威는 3.1배, 投擲個數는 1.8배 增加하여 火焰瓶은 示威의 主要한 수단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87년 1월~9월간과 '88년 같은 기간을 대비할 경우 火焰瓶을 使用한 시위횟수는 줄어든 반면 投擲個數는 5.5배나 급격히 늘어나 그로 인한 人的·物的 被害 急增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별표 1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火焰瓶 使用에 의한 被害의 태양에 따라 刑法 第 164 조(현주건조불방화) 및 제 165 조(공용건조불방화) 또는 제 367 조(공익건조불과괴), 集會및 示威에關한法律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日本의 경우 「火焰瓶의使用등의處罰에關한法律」을 制定·施行하고 있어 同法律의 制定理由와 經過를 說明하고 逐條解説을 한 후 火焰瓶의 規制에 關한 外國의 立法例도 간략히 紹介하고자 한다.

日本의 境遇 1967년(昭和 42年) 10월 8일의 「제 1차 하네다(羽田)투쟁」以後 繼續되어 온 極左暴力集團은 學園紛爭을 비롯하여 各種 街頭鬪爭에서 火焰瓶, 爆發物 등의 兇器를 使用하여 人的·物的으로 막대한 被害를 發生시키고 社會不安을 惹起시켰으며 이러한 治安情勢를 우려한 自民, 社會, 民社, 公明의 4개 政黨이 당시의 既存 法令으로서는 處罰이 困難한 火焰瓶 使用 등을 적절히 圍束하여 社會不安을 제거하자는데 뜻을 모아 同法律案을 衆議院에 共同提案하고 衆·參議院의 의결을 거쳐 制定하게 되었다.

이 法律의 制定으로 極左暴力集團에 의한 火焰瓶의 使用은 隔濶하였고 극에 달했던 熾熱한 武裝鬪爭도 점차 격감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法律의 施行 後 火焰瓶의 使用 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同法律 施行 前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極左暴力集團의 活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基因한다.

II. 日本에서의 火焰瓶規制에 關한 法律制定理由

1. 火焰瓶 使用의 危險性

1. 火焰瓶의 沿革

일반적으로 「火焰瓶」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계 최초로 등장한 것은 第2次大戰 중이었다. 당시 나치 獨逸의 戰車를 主武器로 한 진격에 고전하고 있던 프랑스에서 戰車를 격파하기 위하여 조리오-꾸리 - 급속 라더움의 분리에 성공했던 꾸리부인의 장녀의 남편 - 가 發明하였다고 傳하여지며 프랑스 愛國者 間에서는 이를 「火焰手榴彈」이라고 불렀으며 독일군 전차공격에 사용하여 “戰場에서의 武器로서 상당한 偉力を 발휘” 했다고 전하여지고 있으며 일명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도 한다.

2. 日本에서의 使用

(1) 最初의 使用

火焰瓶이 日本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52년 3월 1일 발생한 고베(神戸) 美軍캠프 襲擊事件]에서였다.

(2) 火焰瓶 鬭爭時代

이 事件 以後 '52년 9월 9일 발생한 「효고(兵庫) 美軍自動車 襲擊事件」까지 6개월 간에 걸쳐 55건에 이르는 火焰瓶을 사용한 不法示威가 全國 各地에서 일어나 「火焰瓶 鬭爭時代」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社會不安을 增大시켰으나 治安當局이 적절히 團束하여 '52년 9월 9일 이후부터 火焰瓶은 자취를 감추었다.

(별표 2 참조)

(3) 火焰瓶 多發時代

그러나 '67년 10월 8일 「제1차 하네다(羽田)事件」 이후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極左暴力集團은 '68년 10월 14일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 무라이마(郡山)

시 所在 日本大鬪爭에서 그간 자취를 감추었던 火焰瓶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여 '69년 1월 「東京大學 封鎖解除事件」·'69년 3월 「교토(京都)大學 入試妨害事件」·'69년 8월 「히로시마(廣島)大學 封鎖解除事件」·'69년 9월 「교토(京都)大學 封鎖解除事件」 등 大學紛爭事件에서, 나아가 '69년 10월 「國際 반전일(反戰日)鬪爭」·'69년 11월 「사토(佐藤)總理 訪美沮止鬪爭」·'71년 4월 「오끼나와(沖繩)鬪爭」·'71년 7월 및 9월 「나리따(成田)鬪爭」·'71년 11월 「오끼나와(沖繩) 返還協定 批准沮止鬪爭」 등 街頭鬪爭에서 大量의 火焰瓶을 使用하여 破壞의 暴力事件이 全國 各地에서 일어났다. (별표 3 참조)

그 가운데 중요한 事件만 보아도 30여건에 이르며(별표 4 참조) 이에 따른 人的 被害만도 死亡 6명을 包含, 690명에 이르러 甚량한 市民으로 하여금 커다란 不安 속에서 痛苦하게 하였고 社會混亂을 惹起하였다. (별표 4, 5 참조)

2. 火焰瓶에 대한 直接處罰規定의 未備

1. 治安當局의 對應

(1) 使用後 段階

'52년 이른 바 「火焰瓶 鬪爭時代」에 治安當局은 徹底하게 이를 團束하려고 努力하여 使用後의 段階에서는 被害의 實態, 行爲의 태양에 따라 放火罪(刑法 第 108條~第 111條), 또는 放火未遂罪(刑法 第 112條)를 적용하여 處理하였다.

(2) 使用前 段階

그러나 火焰瓶의 危險性에 비추어 使用前의 段階에서 團束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당시의 法制下에서는 放火豫備罪(刑法 第 113條) 또는 輕犯罪法 第1條第2號(兇器携帶의罪)를 적용하는 外에도 適用法條文이 없었으며 위 畧存의 法條文 또한 充分한 것이 못되었다.

(3) 爆發物取締罰則 適用의 試圖

이에 따라 治安當局에서는 火焰瓶의 危險性이 爆發物에 못지 아니하고 이를 放

置하면 社會的으로도 重大한 結果를 惹起한다고 보아 爆發物取締罰則(메이지(明治) 17年 太政官(太政官) 포고 第 32 號)의 적용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法院에서는 爆發物取締罰則의 「爆發物」이라 함은 “이화학상의 爆發現狀을 惹起시키는 不安定한 평형상태에 있어서 약품 기타의 材料를 結合한 物體로서 그 爆發作用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사람의 身體 및 財産을 害함에 족한 破壞力을 지닌 것을 지칭한다”고 解釋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火焰瓶은 “유리병에 燻은 유산과 휘발성 기름을 넣고 焰소산칼륨을 붙인 종이틀 병의 外측에 添附하여 焰소산칼륨과 内部的 燻은 유산이 접촉· 化合하여 化學反應을 일으켜 爆發的 分解에 의해 발화가 되고 이것이 瓶의 破壞에 의하여 살포되어 휘발유에 인화되어 焰소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焰소산칼륨과 燻은 유산이 접촉하면 化學的 爆發이 일어나지만 그 폭발은 焰소산칼륨의 량이 근소하기 때문에 爆發作用 그 자체에 의한 직접의 破壞力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爆發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53년 11월 13일 日本 最高裁判所 第 2 小法廷 判決, 刑集 7 卷 11 號 2121 項) 火焰瓶을 爆發物取締罰則上의 爆發物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明確히 하였다.

이와 같은 司法府의 立場은 그 후 ’56년 6월 27일 日本 最高裁判所 大法廷 判決(刑集 10 卷 6 號 921 項)에서도 확인되었으며 同判決은 이에 附屬하여 火焰瓶의 製造 및 行使를 特別히 團束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立法에 의하는 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摘示하였다.

2. 法規補完의 動向

(1) 改正 刑法 準備草案

行政府에서는 法院의 위와 같은 判決도 있을 뿐만 아니라 火焰瓶의 反社會性과 危險性에 비추어 火焰瓶 그 자체를 직접 規制의 對象으로 하는 刑罰法令의 制定의 問題化되어 ’51년에 기초한 「改正刑法 準備草案」 第 86 條第 2 項에 “前項의 目的으로 爆發物에 類似한 破壞力을 지닌 물건을 사용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

는 禁錮에 處한다”는 規定을 新設하였으며 이 草案에서 말하는 “爆發物에 類似한 破壞力을 지닌 物件”은 곧 火焰瓶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後 法制審議會 刑事法特別部會에서는 이를 第4小委員會에 回附하여 檢討한 끝에 “爆發物에 類似한 破壞力을 지닌 物件”이라는 表現으로서는 火焰瓶을 精確히 指稱하지 못한다하여 한 때 “不法으로 火焰瓶 기타 急激한 燃燒作用을 지닌 物건을 사용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危險을 發生시킨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第203條의 2第3項)라고 修正하였으나 '68년 2월 21일 開催된 刑事法特別部會 第4小委員會에서는 消極說이 優勢하여 '71년 11월 29일 法制審議會 刑事法特別部會에서 採擇한 「法制審議會 刑事法特別部會 改正案」에서 除外되었다.

參考로 第4小委員會의 消極說을 紹介하건

① 최근에는 火焰瓶을 사용하는 事例가 없어 現 段階에서 特別히 그러한 規定을 新設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視되고

② 將來 火焰瓶에 대체되는 物건이 사용될 우려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精確히 豫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程度의 規定으로서는 도저히 모든 것을 網束할 수 없고 將來에 使用될지의 與否도 모르는 것을 모두 단속하기 위하여 規定을 修正하는 것은 困難하다.

③ 火焰瓶에 關해서는 이를 使用한 段階에서, 物건에 대하여는 放火罪, 사람에 대하여는 傷害罪 등을 適用할 수 있고 또한 所持하여 갖고 있는 段階에서도 放火豫備罪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兇器準備集合罪의 適用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52년의 火焰瓶鬭爭時代에는 兇器準備集合罪의 規定은 없었으나 이 당시에는 刑法의 一部 改正에 의하여 規定되고 있었다) 등이었다.

(2) 研究의 推進

(가) 現行 法令의 最大限 適用

이러한 渦中에서 '71년 9월 16日 제2차 나라타(成田)대집행투쟁(지바(千葉)현 나라타(成田)시)에서는 警察官 3명을, '71년 11월 14일 시부야(澁谷)쪽동

(동경도)에서는 警察官 1명을 각각 多量의 火焰瓶을 使用하여 死亡케하고 또한 '71년 11월 19일 히비야(日比谷)폭동(동경도)에서는 히비야(日比谷)공원 안에 있는 마쓰모도루(松本樓) 등의 건물을 소훼시키는 暴舉를 일으켜 治安當局에서는 現行 刑罰法令의 最大限 活用に 苦心하였다.

이에 따라 火焰瓶의 所持 段階에서는 태양에 따라 兇器準備集合罪, 放火豫備罪, 殺人豫備罪, 輕犯罪法 第1條 第2號(兇器携帶의 罪) 등을 適用하고 使用 後에는 被害法益에 따라 放火罪, 傷害罪, 殺人罪, 公務執行妨害罪, 器物損壞罪 등의 適用을 考慮하여 不法事態의 未然防止와 效果的 團束에 總力を 傾注하였다.

(나) 單一法 制定의 研究

그러나 「兇器準備集合制」는 “2인 以上の 者가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共同으로 害를 加할 目的을 가지고 集合한다”고 하는 要件이 必要하고 「放火豫備罪」, 「殺人豫備罪」는 “放火 또는 殺人을 犯할 目的”을 필요로 하며 「輕犯罪法 第1條 第2號」는 “隱匿하여 携帶한다”고 하는 要件을 필요로하므로 “1인이 公然히 火焰瓶을 所持한 경우”에는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刑法 第110條의 건조물 이외의 放火罪」에는 “未遂犯을 處罰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에 “火焰瓶의 使用에 의하여 建造物 이외의 財物을 소훼하는 구체적 危險을 發生시켜도” 이러한 사안을 犯罪로 處別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發生하였다.

이에 따라 火焰瓶의 團束에 充分히 對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火焰瓶의 使用·製造·所持 등의 行爲를 直接處罰의 대상으로 하는 刑罰法規의 制定이 必要하다는 要求가 높아져 關係部處, 政黨 등에서 진지하게 研究를 推進하였다.

Ⅲ. 日本에서의 火焰瓶規制에 關한 法律制定經過

1. 單一法 制定 輿論의 高潮

極左暴力集團의 火焰瓶 使用에 의한 破壞的 暴力事件은 治安當局의 芻사의 단속

(동경도)에서는 警察官 1명을 각각 多量의 火焰瓶을 使用하여 死亡케하고 또한 '71년 11월 19일 히비야(日比谷)폭동(동경도)에서는 히비야(日比谷)공원 안에 있는 마쓰모도루(松本樓) 등의 건물을 소훼시키는 暴舉를 일으켜 治安當局에서는 現行 刑罰法令의 最大限 活用に 苦心하였다.

이에 따라 火焰瓶의 所持 段階에서는 태양에 따라 兇器準備集合罪, 放火豫備罪, 殺人豫備罪, 輕犯罪法 第1條 第2號(兇器携帶의 罪) 등을 適用하고 使用 後에는 被害法益에 따라 放火罪, 傷害罪, 殺人罪, 公務執行妨害罪, 器物損壞罪 등의 適用을 考慮하여 不法事態의 未然防止와 效果的 團束에 總力を 傾注하였다.

(나) 單一法 制定의 研究

그러나 「兇器準備集合制」는 “2인 以上の 者가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共同으로 害를 加할 目的을 가지고 集合한다”고 하는 要件이 必要하고 「放火豫備罪」, 「殺人豫備罪」는 “放火 또는 殺人을 犯할 目的”을 필요로 하며 「輕犯罪法 第1條 第2號」는 “隱匿하여 携帶한다”고 하는 要件을 필요로하므로 “1인이 公然히 火焰瓶을 所持한 경우”에는 處罰의 對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刑法 第110條의 건조물 이외의 放火罪」에는 “未遂犯을 處罰하는 規定이 없기” 때문에 “火焰瓶의 使用에 의하여 建造物 이외의 財物을 소훼하는 구체적 危險을 發生시켜도” 이러한 사안을 犯罪로 處別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發生하였다.

이에 따라 火焰瓶의 團束에 充分히 對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하여서는 火焰瓶의 使用·製造·所持 등의 行爲를 直接處罰의 대상으로 하는 刑罰法規의 制定이 必要하다는 要求가 높아져 關係部處, 政黨 등에서 진지하게 研究를 推進하였다.

Ⅲ. 日本에서의 火焰瓶規制에 關한 法律制定經過

1. 單一法 制定 輿論의 高潮

極左暴力集團의 火焰瓶 使用에 의한 破壞的 暴力事件은 治安當局의 芻사의 단속

에도 불구하고 減少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화되자 社會 各界各層에서 現行 法令으로는 火焰瓶을 充分히 단속할 수 없다는 認識이 高漲되고 새로운 法律의 制定이 필요하다는 論議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火焰瓶은 선량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치 아니한 兇器일 뿐만 아니라 火焰瓶이 지니고 있는 反社會性과 危險性 만으로도 規制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輿論이 造成되었다.

2. 法案의 提出 및 審議

(1) 자민당 단독제출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따라 '71년 12월 20일 제 68 회 國會에 자민당 소속의 다카하시(高橋英吉)議員外 7명이 火焰瓶의 使用·製造 및 所持 등을 處罰의 對象으로 한 「火焰瓶의 使用등의 處別에 關한 法律案」을 議員提案으로 衆의원에 제출하였다. (參考資料)

이를 접수한 衆의원에서는 法務委員會에서 審議하도록 措置하는 한편 참고인으로 龍景대학 후지키(藤木)교수 및 専修(專修)대학 히라다(平出)교수를 소환하여 신중한 심의를 하였으며 이 審議過程에서 原案 第 2 條의 法定刑의 緩和(原案의 “10년 이하의 懲役”을 → “7년 이하의 懲役”으로 改正), 原案 第 3 條第 2 項의 容器의 範圍의 限定(原案의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가솔린, 등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불질을 넣은 물건”을 → “유리병 기타의 용기에 가솔린, 燈油 其他 인화하기 쉬운 불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것에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하면 火焰瓶이 되는 것”으로 表現을 고침)하는 作業이 이루어졌다.

(2) 自民黨案 撤回 및 4 黨共同 提案

그 후 '72년 4월 12일 衆의 衆議員 法務委員會는 다카하시(高橋英吉)議員外 7명의 議員이 提出한 法律案을 撤回하고 國民的 要請에 비추어 自由民主黨, 日本社會黨, 民主社會黨, 公明黨이 合議, 위의 參考人들이 修正한, 새로운 內容의 「火焰瓶의 使用등의 處罰에 關한 法律案」을 共同 提案하였다.

(3) 審議 및 施行

'72년 4월 14일 衆議院 本會議에서 全員一致로 可決하여 當日 參議院에 送付하였다.

參議院에서도 法務委員會의 審議를 行하면서 京都(京都)大學의 나카야미(中山)교수를 參考人으로 召喚하여 同法律案에 대한 意見を 聽取하는 등 慎重하게 審議한 後, '72년 4월 24일 參議院 本會議에서 全員一致로 可決시켜 法律案을 成立시키고 同日 法律 第17號로 公布하여,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20일이 經過한 '72년 5월 14일부터 施行되기에 이르렀다. 參考로 同法律案과 關하여 衆議院 法務委員會 및 參議院 法務委員會에서 各各 決議한 附帶議決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① 衆議院 法務委員會 決議('72년 4월 12일)

1. 政府는 火焰瓶의 使用 등의 處罰에 關하여는 檢査 및 法規의 適用에 있어 결코 濫用하거나 擴大解釋하여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不當하게 制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留意하여야 한다.

1. 最近 各地에서 火焰瓶 등을 使用하는 不法事案이 頻發하고 警察官 뿐만 아니라 一般人도 多數의 死傷者를 發生케하는 現象에 比추어 政府는 火焰瓶 등의 使用에 의한 一般人의 被害救濟에 對하여서도 遺憾이 없도록 迅速히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② 參議院 法務委員會 附帶決議('72년 4월 21일)

1. 政府는 火焰瓶의 使用 등의 處罰에 關한 法律이 國民의 基本的 人權에 重大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 點에 比추어 그 運用에 있어서 어떠한 境遇에도 이를 濫用하거나 또는 擴大解釋하여 國民의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嚴格히 留意하여야 한다.

1. 本法 第3條 第2項은 「火焰瓶」이 되기 直前의 未完成品의 所持를 團束한다는 趣旨입에 比추어 檢査에 있어서는 「火焰瓶의 製造에 使用하고자 하는 目的」의 有無의 認定을 嚴格하게 行하여야 한다.

IV. 日本「火焰瓶의 사용등의處罰에關한法律」逐條 解說

第1條(定 義)

이 法律에 있어서 火焰瓶이란 유리병 기타의 容器에 揮발유, 등유 기타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넣고, 그 物質을 流出하거나 또는 飛散한 경우에 이것을 燃燒시키기 위하여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한 것으로 사람의 生命 또는 財産에 害를 加하는 데에 使用되는 것을 말한다.

(解 說) 本條는 이 法律에 있어서 火焰瓶의 定義를 定한 規定이다.

一般的으로 極左暴力集團 등이 使用하고 있는 火焰瓶은 揮발유, 등유 其他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맥주병, 콜라병 등의 유리병에 넣어, 여기에 염소산칼륨과 유산의 化學反應을 利用하여 불을 내도록 裝置한 것이나, 맥주병 등의 유리병에 휘발유, 등유 등의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넣고 병의 입구에 引火시켜서 燃燒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화선으로서 천, 종이 등을 利用한 것이다.

이와 같은 火焰瓶은 國內에서도 過去의 境遇 1952年(昭和27年)의 火焰瓶濫爭 또는 1968年(昭和43年)以後의 極左暴力集團 등의 暴徒事例에 의하여 明確해진 바와 같이 오로지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害를 주려는데 使用되는 것이고 게다가 무기 그 자체로서 極히 危險한 兇器일 뿐만 아니라, 모든 市民生活에 아무런 利益도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揮發油, 燈油 등의 引火性 物質은 現代社會에 있어서 照明 또는 溫房 등에 必須不可缺한 物質이고, 이러한 照明, 溫房 등의 기구도 이것을 燃燒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도화선을 사용하고 있는(알콜램프, 라이터 등) 것이 많고 이러한 生活必須機具와 火焰瓶과는 그 形狀, 構造에 있어서 類似한 點으로부터 그 區別을 明確히 한다.

本 法律의 適用範圍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第1條의 定義規程이 마련된 것이다.

「유리병 기타의 용기」란 유리병 외에도 기제, 자기제, 플라스틱제, 폴리에틸렌

제 등의 容器를 意味하는 것으로 破鎖性을 갖는 용기가 많이 利用되고 있는 現實이지만 반드시 破鎖性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또 容器의 大小形態에 대해서는 法文上 格別한 限정은 없지만 우선 火焰瓶은 運搬이 容易하고, 또한 攻擊對象을 向해서 迅速, 容易하게 던질 수 있다는 特性을 갖는 것이므로 통상의 事態에 대해서는 혼자서 運搬 또는 投擲可能한 程度의 크기인 容器로 解釋해야 한다.

以外에 「그 物質을 流出하고 또는 飛散한 경우」라는 要件과의 關係에서 內容物이 유출 또는 飛散할 수 있는 形狀, 材質의 容器인 것을 必要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本 法律 施行 後 裁判所에 있어서 本 法에서 말하는 火焰瓶으로 判斷한 容器에는 맥주병, 코카콜라병, 펄시콜라병, 우유병이 있다.

「揮發油, 燈油 기타 引火하기 쉬운 物質」이란 휘발유, 등유 외에 아세톤, 에칠벤젠, 옥탄, 에텔, 이황화탄소, 크로지온, 아세트알데히드, 에칠알콜과 같이 휘발성을 갖고, 容易하게 引火하여 急激히 燃燒하는 物質을 말한다.

容易하게 引火할지 어떨지는 그 物質의 濕度, 導火線의 大小, 火口의 溫度에도 關係하지만 引火點이 常溫 以下의 境遇는 勿論 常溫보다 높은 境遇에도 燈油 程度의 것이라던 他物質과 混合시키거나, 高熱의 導火線을 使用함에 따라서 引火하므로, 引火하기 쉬운 物質에 該當함은 明確하지만 揮發性을 갖지 않는 적린(안정성 냥용 材料) 등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다.

「引火」란 揮發性 物質로부터 發生하는 蒸氣가 導火線에 의하여 燃燒하는 現狀을 말한다.

「發火裝置」란 引火하기 쉬운 物質에 引火시켜서 燃燒케 하기 위하여 必要한 導火線을 스스로 作動시키는 裝置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염소산칼륨과 유산 혹은 금속나트륨과 희유산의 化學反應을 利用하여 불을 낼 수 있도록 設置된 裝置가 여기에 속한다.

금속나트륨을 유리병안에 設置하여 投擲한 경우에 지상에 있는 물과 접촉하여 불을 내는 것도, 금속나트륨을 發火材로 하여 이것이 불을 내도록 設置한 것이므로

發火裝置라고 할 수 있다.

「點火裝置」란 引火하기 쉬운 物質에 引火시켜서 燃燒하는데 必 需한 導火線을 스스스로 發하는 것이 아니고, 點火에 의해서 發하도록 設置한 것을 말하는 바, 가령 포·지 등을 利用한 裝置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物質을 流出 또는 飛散한 경우에 이것을 燃燒시키기 위한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한다」란 유리병 외의 容器에 들어 있는 揮發油, 燈油 기타의 引火하기 쉬운 物質이 流出 또는 飛散한 때에 여기에 引火시켜서 燃燒케 하기 위한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가 當該 容器에 設置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에 害를 입히는데 使用되는 것」이란 社會通念上 오로지 사람의 生命, 身體, 財產에 害를 입히기 위하여 使用된다고 認定되는 것을 말한다. 그 物體의 構造, 形狀, 機能, 利用狀況 등에서 客觀적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第 2 條(火焰瓶의 使用)

- ① 火焰瓶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에 危險을 發生시킨 자는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 ② 前項의 未遂罪는 罰한다.

(解 說) 本罪의 保護法益은 火焰瓶을 使用하는 行爲가 不特定 多數人에게 危險을 끼치는 것이므로 「公共의 安全」에 있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으므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에 대한 危險을 發生시키는 것을 要件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觀點에서 본다면 火焰瓶을 使用하는 行爲의 危險性으로부터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의 安全을 保護하려고 하는 것이다.

「使用」이란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流出, 飛散시켜서(포지계 허어) 燃燒하려는 뜻한 狀態에 두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現實적으로 燃燒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發火裝置를 갖춘 火焰瓶을 投擲하고 혹은 發火裝置를 갖춘 火焰瓶에 點火하여 投擲하는 行爲가 여기에 해당한다. 時限裝置附着의 火焰瓶이라면 時限裝置를 실향으로 만들어 設置한다면 足하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爆發物 團束罰則 第1條에서 말하는 「爆發物」에 대해서는 爆發할 만한 狀態에 있다면 同罰則 第1條에서 말하는 「使用」에 해당한다고 解釋하지만 火焰瓶의 危險性은 爆發物과는 다르다.

引火하기 쉬운 物質이 燃燒한다는 경우만이 아니고 그것이 용기로부터 一時에, 同時에, 廣範圍하게 流出되고 또는 飛散되어서 急激한 燃燒作用을 發生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流出, 飛散시켜서 燃燒하려는 狀態에 두는 것만이 아니고 아직 「使用」하지 않은,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流出, 飛散시켜서 燃燒하려는 狀態에 두는 것을 必要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點火裝置를 갖춘 火焰瓶에 대해서 말하면 點火裝置에 點火한 段階에서는 아직 「使用」의 實行의 着手이라고는 할 수 없고 點火하여 投擲行爲에 着手함에 따라서 實行의 着手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危險을 發生시켰다」란 사람의 사상 또는 재산(本條 規定의 趣旨로부터 判斷해서, 여기에 말하는 「財産」이란 火焰瓶의 使用이라는 유형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부처재산 기타 刑法上에서 말하는 財産上의 利益은 包含되지 않는다고 解釋해야 한다)의 소훼, 損壞를 끼치는 구체적 危險을 發生시키는 것을 말한다.

具體的 結果 發生의 有無를 따지지 않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족하다.

또, 不特定 多數人에 대한 危險을 發生시키는 것을 必要로 하지 않고 特定의 小數人에 대한 危險의 發生을 갖고서도 족하다. 고의적인 내용으로서는 火焰瓶을 使用한다는 認識만이 아니고 火焰瓶의 使用에 의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危險을 惹起할 所持가(一般的 可能性) 있는 경우의 認識도 必要로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本條의 火焰瓶 使用罪와 刑法上의 罪와의 罪數關係에 대해서는 本罪가 이미 兇術된 바와 같이 公共의 安全을 保護法益으로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火焰瓶을 使

用하는 行爲의 危險性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安全도 保護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火焰瓶의 使用에 의하여 사람을 死傷시키고 또는 재산을 소훼, 損壞한 境遇에는 本罪 外에 殺人, 傷害, 放火, 器物損壞 등의 罪가 함께 成立된다.

兩者는 觀念的 競合의 關係에 선 것으로 解釋한다. 또 警察官 등 公務員의 職務執行을 妨害할 目的으로 火焰瓶을 使用한 경우, 당해 火焰瓶의 使用이 同時에 暴行, 脅迫이 該當할 때에는 本罪 外에 公務執行妨害罪가 成立하고, 兩者는 역시 觀念的 競合의 關係에 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多數가 集合하여 暴行, 脅迫을 行하고 그 行爲가 騷擾罪를 構成할 경우에 있어서 는 당해 暴行, 脅迫의 手段으로서 火焰瓶을 使用한 경우에 있어서의 本罪와 騷擾罪의 關係에 대해서는, 火焰瓶의 使用은 火力에 의한 公衆의 不安이 특히 重視되는 것에 비추어 兩罪는 同時에 成立하고 역시 觀念的 競合의 關係에 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本條 第2項의 未遂罪는 使用 그 자체가 未遂로 끝난 경우(着手未遂)와 사용하였지만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具體的 危險을 發生시키지 않은 경우(實行未遂)를 包含한 것이다.

着手未遂의 例로서는 火焰瓶의 投擲行爲에 着手하고, 投擲前에 체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거나, 다만 着手未遂이건 實行未遂이건 具體的 危險犯인 事實은 變함이 없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危險을 發生시킬 素地가 있는 狀態가 存在함을 必要로 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危險을 發生시킬 素地가 전혀없는 경우, 가령 人家가 전혀없는 들판에서 火焰瓶을 投擲하는 듯한 行爲는 未遂罪로 成立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第 3 條(火焰瓶의 製造, 所持 등)

① 火焰瓶을 製造 또는 所持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 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火焰瓶의 製造에 使用할 目的을 갖고서 유리병 기타의 容器에 揮發
油, 燈油 기타 引火하기 쉬운 物질을 넣은 物건으로 여기에 發火裝置 또
는 點火裝置를 設置하기만 하면 火焰瓶이 되는 것을 所持한 者도 前項과
같다.

(解 說) 本條는 火焰瓶의 製造, 所持 等의 行爲를 處罰하려고 하는 것이
다. 火焰瓶은 不特定 多數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에 대하여 重大한 侵害 및 危
險을 끼치는 것에 비추어 關聯된 侵害 및 危險의 發生을 效果的으로 억지하고 중
대한 法益의 侵害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는 使用의 豫備的 段階에 해당하는 火
焰瓶의 製造 및 所持를 處罰함과 同時에 거듭 火焰瓶의 製造에 使用할 目的으로 發
火裝置 또는 點火裝置까지 設置한다면 火焰瓶이 될 수 있는 所謂 火焰瓶의 半成品
을 所持하는 경우도 處罰의 對象으로 規制함이 必要하다. 이것이 本條를 設치한 趣
旨이다.

「製造」란 유리병 외의 용기에 휘발유, 등유 기타 引火하기 쉬운 物質 및 發火裝
置, 點火裝置 等의 原材料를 使用하여 火焰瓶을 提出하는 境遇는 물론 加工, 變形
및 修理도 包含하는 것이다. 이미 引火하기 쉬운 物질이 들어있는 容器에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하는 行爲도 本條에서 말하는 製造가 된다고 解釋한다.

「所持」란 火焰瓶을 자기가 支配할 수 있을 만한 狀態에 두는 것을 말하고 保管,
隱匿, 握持, 携帶, 運搬 等의 여러 形態를 생각할 수 있다. 本條는 火焰瓶을 자기
의 支配內에 두고, 運搬하는 것도 禁止하는 趣旨인 것이 明白하므로 이와 같은 運
搬行爲도 所持의 概念에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또한 所持目的의 與否는 물론
것도 없으며 자기를 위하여 所持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所持하거나를 不問한다.

火焰瓶의 保管을 他人에게 委託한 경우이더라도 그 受託者를 通하여 間接的으로

火焰瓶의 支配關係를 持續하는 한은 火焰瓶을 所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火焰瓶을 製造한 뒤 繼續해서 所持하고 있는 경우의 製造罪와 所持罪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製造後의 所持가 製造에 隨伴할 必然的 結果로서 一時에 지나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所持는 製造에 吸收되고 製造의 一罪가 成立함에 지나지 않지만 所持의 形態가 變化하여 새로운 所持가 開始된 것으로 社會通念上 認定되는 경우에는 製造罪와 所持罪와는 公히 成立된다. 즉 兩者는 併合罪의 關係에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本條의 第2項은 火焰瓶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을 갖고, 유리병 외의 容器에 揮發油, 燈油 其他 引火하기 쉬운 물질을 넣은 것으로 發火 및 點火裝置를 設置하기만 하면 火焰瓶이 되는 것을 所持하는 行爲를 處罰하는 規定이다.

本條 第1項의 製造罪의 前段階에 있는 特定한 경우를 그 行爲의 危險性에 着眼하여 獨立罪로 한 것이다. 다만 引火하기 쉬운 물질을 넣은 容器의 所持는 國民의 日常生活中 業務 其他 正當한 理由로 行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主觀的 立法要素를 必要로 하는 目的犯으로 한다.

「火焰瓶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이라함은, 行爲者 스스로가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인가, 他人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인가를 묻지 않는다. 他人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의 境遇에는 그 외의 타인이 製造意思를 갖고 있는지 어떤지, 製造에 從事함이 확실한지 어떤지는 關係가 없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目的은 그 性質上, 認識의 程度로는 不足하고 引用함을 要한다고 解釋해야 한다.

本條 第2項에 의해서 그 所持가 處罰의 對象으로 되는 것은 揮發油, 燈油 기타 引火하기 쉬운 물질을 넣은 유리병 이외의 容器 가운데 發火 및 點火裝置를 設置하기만 하면, 第1條에서 말하는 火焰瓶이 되는 것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自動車의 揮發油 탱크가 여기에 包含되지 않는 것은 물론, 드림봉에 대해서도 분장 내용물이 流出 또는 飛散하지 않는 듯한 構造로 되어 있으므로, 특히 이것을 改造하여 내용물을 流出 또는 飛散할 수 있게 한 경우는 各別하고 普通構造의 드림봉은 包

속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콜라병을 利用하여 火焰瓶을 製造할 目的으로 한되병에 揮發油를 넣어 所持하고 뒤에 이것을 콜라병을 조금 나누어서 火焰瓶을 製造하는 狀態가 本條 第 2 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本條 第 2 項이 반드시 火焰瓶이 되는 最終容器에 限定하는 것이 아니고 揮發油가 들어있는 한되병 자체가 여기에 發火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한다 해도 第 1 條에서 말하는 火焰瓶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도 本項의 對象이 된다고 解釋된다.

다만 火焰瓶을 投擲한 後 그 火勢를 強하게 하기 위하여, 揮發油를 유리병 등의 容器에 넣어서 所持하고 있는 경우는 「火焰瓶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이 없으므로 本條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V. 外國의 立法例

火焰瓶의 使用 등에 關한 規制에 대하여 日本은 單一法을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는 外에 歐美諸國에서도 火焰瓶의 使用 등을 規制하기 위한 特別法은 없으나 刑法上의 爆發物에 關한 罪 등에 包含시켜 製造, 所持, 保管, 引渡, 提供, 使用, 原料保管 등의 行爲를 處罰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美國은 合衆國 法典 第 231 條(集團治安攪亂行爲) 등에서 爆發物 其他 發火裝置의 製造, 運送, 使用 및 教唆한 경우에 1 萬달러 以下の 罰金 또는 5 年 以下の 拘禁 및 併科가 可能하고, 獨逸의 경우 刑法 第 311 條(爆發의 招來)에 의하여 爆發物에 의해 爆發招來時 特히 중한 경우 5 年 以上 重懲役, 그리고 중하지 아니한 경우 6 月 以上の 輕懲役을 處하도록 하고 있으며 獨逸大審院은 爆發物에 揮發油를 包含시키고 있다.(獨逸大審院 '82.1.21 判決)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刑法 第 311 條의 2(爆發物에 의한 重罪의 豫備)에서 爆發物 등을 製造, 保管, 引導, 輸入한 경우 1 年 以上の 輕懲役이나 重하지 아니한 경우 3 月 以上 3 年 以下の 輕懲役에 處하고 刑法 第 367 條(危境罪)에서 發火 또는

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콜라병을 利用하여 火焰瓶을 製造할 目的으로 한되병에 揮發油를 넣어 所持하고 뒤에 이것을 콜라병을 조금 나누어서 火焰瓶을 製造하는 狀態가 本條 第 2 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本條 第 2 項이 반드시 火焰瓶이 되는 最終容器에 限定하는 것이 아니고 揮發油가 들어있는 한되병 자체가 여기에 發火 또는 點火裝置를 設置한다 해도 第 1 條에서 말하는 火焰瓶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도 本項의 對象이 된다고 解釋된다.

다만 火焰瓶을 投擲한 後 그 火勢를 強하게 하기 위하여, 揮發油를 유리병 등의 容器에 넣어서 所持하고 있는 경우는 「火焰瓶의 製造用으로 使用할 目的」이 없으므로 本條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V. 外國의 立法例

火焰瓶의 使用 등에 關한 規制에 대하여 日本은 單一法을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는 外에 歐美諸國에서도 火焰瓶의 使用 등을 規制하기 위한 特別法은 없으나 刑法上의 爆發物에 關한 罪 등에 包含시켜 製造, 所持, 保管, 引渡, 提供, 使用, 原料保管 등의 行爲를 處罰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美國은 合衆國 法典 第 231 條(集團治安攪亂行爲) 등에서 爆發物 其他 發火裝置의 製造, 運送, 使用 및 教唆한 경우에 1 萬달러 以下の 罰金 또는 5 年 以下の 拘禁 및 併科가 可能하고, 獨逸의 경우 刑法 第 311 條(爆發의 招來)에 의하여 爆發物에 의해 爆發招來時 特히 重한 경우 5 年 以上 重懲役, 그리고 重하지 아니한 경우 6 月 以上の 輕懲役을 處하도록 하고 있으며 獨逸大審院은 爆發物에 揮發油를 包含시키고 있다.(獨逸大審院 '82.1.21 判決)

아울러 프랑스에서는 刑法 第 311 條의 2(爆發物에 의한 重罪의 豫備)에서 爆發物 등을 製造, 保管, 引導, 輸入한 경우 1 年 以上の 輕懲役이나 重하지 아니한 경우 3 月 以上 3 年 以下の 輕懲役에 處하고 刑法 第 367 條(危境罪)에서 發火 또는

引火하기 쉬운 製品, 原料 또는 其他 貯藏品을 燃焼할 危險있는 場所 또는 容器에 保管한 者를 150 프랑 以下の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하도록 하고 있으며, 伊太利에서도 刑法 第 435 條(爆發物의 製造 또는 所持)에 의하여 公共의 安全이 加害할 目的으로 디아나마이트 또는 爆發性·窒息性·眩惑性·有毒性 其他 燃焼性의 物質을 製造, 獲得 또는 所持한 者는 1年 내지 5年의 懲役に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VI. 結 語

序言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最近 頻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示威樣相은 그 數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過激·暴力化 되는 傾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手段으로서 武器 아닌 武器로 武裝하고 있는 火焰瓶의 投擲行爲가 普遍化 되고 있어 이로 因해 人命과 財産에 막대한 被害를 입히고 社會全體에도 커다란 不安과 憂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法體系 下에서는 火焰瓶의 製造·所持行爲를 處罰하는 法規가 없고, 使用後 人命이나 財産에 被害를 加했을 경우이는 “暴力行爲등處罰에 關한法律” 또는 刑法上의 “放火罪” 등으로 處罰할 수 있으나 搜查上 口證이 어려워 이에 充分히 對應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그러므로 火焰瓶 자체의 反社會性과 危險性을 深刻하게 認識하고 火焰瓶의 製造·所持·使用 등을 根絶시키는 方案이 多角的으로 檢討될 段階에 있다고 본다.

引火하기 쉬운 製品, 原料 또는 其他 貯藏品을 燃燒할 危險있는 場所 또는 容器에 保管한 者를 150 프랑 以下の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하도록 하고 있으며, 伊太利에서도 刑法 第 435 條(爆發物의 製造 또는 所持)에 의하여 公共의 安全이 加害할 目的으로 다이내마이트 또는 爆發性·窒息性·眩惑性·有毒性 其他 燃燒性의 物質을 製造, 獲得 또는 所持한 者는 1年 내지 5年의 懲役に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VI. 結 語

序言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最近 頻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示威樣相은 그 數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過激·暴力化 되는 傾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手段으로서 武器 아닌 武器로 武裝하고 있는 火焰瓶의 投擲行爲가 普遍化 되고 있어 이로 因해 人命과 財産에 막대한 被害를 입히고 社會全體에도 커다란 不安과 憂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行 法體系 下에서는 火焰瓶의 製造·所持行爲를 處罰하는 法規가 없고, 使用後 人命이나 財産에 被害를 加했을 경우이는 “暴力行爲등處罰에 關한法律” 또는 刑法上의 “放火罪” 등으로 處罰할 수 있으나 搜查上 口證이 어려워 이에 充分히 對應할 수 없는 實情에 있다.

그러므로 火焰瓶 자체의 反社會性과 危險性을 深刻하게 認識하고 火焰瓶의 製造·所持·使用 등을 根絶시키는 方案이 多角的으로 檢討될 段階에 있다고 본다.

〈別表 1〉 '88.1 ~ 9間 火焰瓶使用示威 및 被害狀況(우리나라)

○ 示威回數 및 投擲個數

年 度	火焰瓶使用 示威回數	投 擲 個 數
'87. 1 ~ 9	1,847 回	40,861 個
'88. 1 ~ 9	1,313 回(0.71 倍)	225,944 個(5.5 倍)

○ 人的 被害

計				警 察				一 般		
總計	死亡	重傷	輕傷	小計	死亡	重傷	輕傷	小計	重傷	輕傷
592	1	76	515	587	1	73	513	5	3	2

○ 物的 被害

計	建 物 燒 失							車 輛 燒 失			산 불	工 場 資 材
	小 計	警 察 官 署	黨 舍	行 政 官 署	言 論 社	外 國 機 關	一 般 建 物	小 計	警 察	一 般		
191	155	105	25	14	3	5	3	32	21	11	3	1

〈別表2〉

1952年 火焰瓶使用事件（日本）

日 字	事 件 名	使用個數
'52. 3. 1	神戸米軍第三場襲撃事件	2
3. 4	大阪生野署管内派出所襲撃事件	3
3.16	鶴見税務署襲撃事件	4
3.16	川崎 "	1
3.18	横須賀 "	1
3.19	横浜米軍倉庫襲撃事件	5
3.28	八王子税務署襲撃事件	1
3.30	神戸市警茱薬派出所襲撃事件	1
3.30	山口宇部窒素工場爆破事件	2
4. 2	横須賀市警機動隊中隊長宅襲撃事件	3
4. 5	秋田・小坂町警察署等襲撃事件	4
4. 6	武 野警察署襲撃事件	4
4.10	群馬・沼田税務署襲撃事件	1
4.21	福岡・田川署員宅等襲撃事件	4
4.24	茨城・大平山爆發物實驗事件	10
4.29	廣島・古市町駐在所襲撃事件	4
4.30	長野・辰野地區署襲撃事件	1
5. 1	特審局中國支局員親戚宅襲撃事件	2
5.29	茨城・土浦市荒神橋派出所襲撃事件	1
5.30	新宿事件	不明
5.30	岩之坂上派出所襲撃事件	"
6.16	澁谷驛前無届集會事件	"
6.18	下關市幡生派出所襲撃事件	6
6.24	枚方事件	不明
6.25	吹田事件	"

日 字	事 件 名	使用個數
6.25	新宿驛紛爭事件	〃
6.20	姫路市米軍人宅襲撃事件	1
'52. 6.25	小倉市米軍登車襲撃事件	2
6.25	滋賀・上京町派出所襲撃事件	1
6.27	福岡民團事務所襲撃事件	2
6.27	静岡・三島市警察署警備課長宅襲撃事件	1
7. 1	御徒町民團・北朝鮮紛爭事件	3
7. 1	東京・調布町長宅襲撃事件	3
7. 3	川崎臨港署一町派出所襲撃事件	1
7. 3	東大生住民登録反対行動	2
7. 3	大阪・帆足・宮腰兩氏歡迎集會事件	不明
7. 7	大須事件	220
7. 8	石川・野田派出所襲撃事件	2
7. 8	神奈川・平塚稅務署襲撃事件	7
7. 9	姫路派出所等襲撃事件	2
7.11	北駿東地區署警備課員宅襲撃事件	2
7.12	横須賀米軍人宅襲撃事件	1
7.13	静岡・中央署宮崎派出所襲撃事件	1
7.13	千葉地方檢察廳襲撃事件	1
7.14	京都市警外勤部長宅襲撃事件	6
7.15	山口派出所襲撃計劃事件	1
7.15	旭川驛集團暴力事件	2
7.15	小樽市無届集會事件	8
7.15	沼津市無届町屋事件	17
7.15	津稅務署暴破事件	9
7.15	愛媛・堀之内稅務署襲撃事件	3
7.16	奈良警察署襲撃事件	10

日 字	事 件 名	使用個數
7.31	埼玉米軍自動車襲撃事件	6
8.16	前橋地檢檢事宅襲撃事件	2
9. 9	兵庫米軍自動車襲撃事件	2
合 計	55 件	380

〈別表3〉 1968～1971間 主要火焰瓶使用事件(日本)

年 月 日	事 件 名	合 計	使用個數	押収個數	備 考
69. 1.18	東大闘争 (東京)	345	300	45	
2. 6	關西學院大事件 (兵庫)	147	30	117	
3. 1	京大入試妨害事件 (京都)	480	63	417	
4.28	4・28 沖繩日事件 (東京)	180	100	80	
5.20	立命館大事件 (京都)	181	10	171	
5.23	大阪大事件 (大阪)	148	130	18	
6.29	京大事件 (京都)	154	130	24	
8.17	廣島大事件 (廣島)	827	690	137	
8.17	中大搜索妨害事件 (東京)	243	160	83	
9. 3	早大事件 (")	115	50	65	
9. 4	外相訪米阻止闘争 (")	141	15	126	
9.20	京大封鎖解除妨害事件 (京都)	1,514	1,428	86	
9.30	日大奪還闘争 (東京)	200	200		
10.10	羽田二周年闘争 (愛知)	132	111	21	
10.14	九大封鎖解除妨害事件 (福岡)	414	370	44	
10.21	國際反戰日闘争 (東京)	1,542	311	1,231	
10.21	" (北海道)	260	260		

年月日	事 件 名	合 計	使用個數	押收個數	備 考
11. 8	北大封鎖解除妨害事件 (")	1,263	847	416	
11. 13	總理訪米阻止鬭爭 (東京)	227	100	127	
11. 16	" (")	3,330	1,113	2,217	
'70. 6. 14	6.14 反安保統一行動 (")	193	71	122	
6. 15	6.15 " (")	101	50	51	
6. 25	6.23 " (")	137	100	37	
'71. 2. 22	成田空港用地第1次代執行 (千葉)	180	150	30	
5. 30	5.30 沖繩返還協定阻止鬭爭 (東京)	60	60		
'71. 6. 15	沖繩返還協定調印阻止鬭爭 (東京)	534	150	384	
7. 26	成田空港用地假處分阻止鬭爭 (千葉)	583	395	188	
9. 16	成田空港第2次代執行阻止鬭爭 (")	4,236	1,900	2,336	
10. 21	10.21 國際反戰日鬭爭 (東京)	493	438	55	
11. 10	11.10 沖繩返還協定批准阻止鬭爭 (")	163	70	93	
11. 14	11.14 " (")	1,391	386	1,005	
"	" (宮城)	40	40		
"	" (神奈川)	45	5	40	
11. 19	11.19 沖繩返還協定批准阻止鬭爭 (東京)	567	280	287	
"	" (北海道)	63	63		
"	" (大阪)	160	80	80	
"	" (神奈川)	200	200		
11. 24	11.24 沖繩返還協定批准阻止鬭爭 (東京)	121	74	47	
合 計	38 件	21,110	10,930	10,180	

〈別表4〉 1968.1.1 ~ 1971.12.31間 火焰瓶에 의한 人的 被害狀況 (日本)

被害	年度	計	'68	'69	'70	'71
合計		685(6)	1	422(1)	23	339(5)
警察官負傷		496(4)	1	304	23	168(4)
一般人負傷		189(2)		118(1)		71(1)

※ ()안은 死亡者數

〈別表5〉 1968.1.1 ~ 1971.11.24間 都道府縣別 火焰瓶使用・押收狀況 (日本)

都道府縣	年度		'68		'69		'70		'71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北海道	1,325	569			1,203	549	5	5	117	15
青森	2	5			2	5				
岩手	11	14					1	11	10	3
宮城	151				30		3		118	
秋田	32	17			32	17				
山形	5	23			3	23			2	
福島	40	9	40	9						
東京	4,268	9,432			2,864	6,577	208	367	1,196	2,488
茨城		21				21				
栃木		6				6				

都道府縣	年度 使用・押收	合 計		'68		'69		'70		'71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群 馬			1				1				
埼 玉		7				7					
千 葉		2,485	2,584					40	30	2,445	2,554
神 奈 川		338	188			72	73	8	18	258	97
新 潟		5						5			
山 梨		17	15			17	15				
長 野											
靜 岡			95				95				
富 山		10	1				1	10			
石 川		6				6					
福 井											
岐 阜											
愛 知		19	91			15	90			4	1
三 重		3	1			1	1			2	
滋 賀		3				3					
京 都		1,824	1,313			1,824	1,294		15		4
大 阪		194	1,184				843		80	194	261
兵 庫		44	87			30	28		45	14	14
奈 良											
和 歌 山		2								2	
鳥 取		16	117			16	117				
島 根		22	4			20		2	4		

年度 使用・押收 都道府縣	合 計		'68		'69		'70		'71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使用	押收
岡山	3	10			3	10				
広島	711	146			710	137			1	9
山口		2				2				
徳島										
香川										
愛媛		83				37		45		1
高知										
福岡	423	93			388	66	2		33	27
佐賀										
長崎	30	30			30	30				
熊本	5	12			5	12				
大分										
宮崎	4	1					4	1		
鹿児島										
合 計	3,005	1,654	40	9	7,281	10,050	288	621	4,396	5,474

〈別表 6〉 1968.1.1 ~ 1971.12.31 間 火焰瓶에 의한 物的 被害狀況(日本)

被害		年度	計	'68	'69	'70	'71
警察 建物	警 察 署		4		3	1	
	派 出 所		53 (3)		19(3)	4	30
	公 舍		1				1
警 警 車 輛			19 (1)		10(1)	1	8
小 計			77 (4)		32(4)	6	39
警察 施設 以外 의 建 物	高 校		4		1		3
	大 學		24 (1)	1	15	3	5 (1)
	外 務 省		1				1
	外 國 公 館		2		1		1
	縣 廳		1		1		
	公民館・役場		2 (1)				2 (1)
	消 防 署		1				1
	事務所・倉庫		12 (11)				12(11)
	銀 行		2		1		1
	一 般 民 家		8 (1)			1	7 (1)
飯 場		33 (26)			1(1)	32(25)	
鐵 道 施 設			3		2		1
放 送 施 設			1		1		
其 他			6				6
警察以外의 車輛			89 (58)		7(5)		82(53)
小 計			189 (98)	1	29(5)	5(1)	154(92)
合 計			266(102)	1	61(9)	11(1)	193(92)

(參考資料)

自民黨 單獨案(高橋英吉外 7 人案)

○ 火焰瓶의 使用 등의 處罰에 關한 法律案

第 1 條(定義) 이 法律에서 “火焰瓶”이라 함은 유리병 기타의 容器에 揮發油, 燈油 其他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넣어 그 物質이 流出 또는 飛散한 境遇에 이것을 燃燒시키기 위하여 發火裝置 또는 點火裝置를 한 物件으로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產에 害를 加하는데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第 2 條(火焰瓶의 使用) ①火焰瓶을 使用하여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產에 危險을 發生케한 者는 10 年 以下의 懲役に 處한다.

②前項의 未遂罪는 罰한다.

第 3 條(火焰瓶의 製造, 所持 등) ①火焰瓶을 製造하거나 所持한 者는 3 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 萬엔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火焰瓶의 製造에 쓸 目的으로 유리병 其他의 容器에 揮發油, 燈油 其他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넣은 物件을 所持한 者도 前項과 같다.

附 則

이 法律은 公布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20 日을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提案理由 및 提案說明

1. 提案理由

最近에 있어서 火焰瓶을 使用하는 不法事犯의 實情 등에 비추어 火焰瓶의 使用, 製造, 所持 등의 行爲에 대하여 特別한 處罰規定을 둘 必要가 있다. 이 것이 이 法律案을 提出하는 理由임.

2. 提案說明

이 法律案은 最近에 있어서 火焰瓶을 使用하는 不法事犯의 實情에 비추어 火

火焰瓶의 使用, 製造, 所持 등의 行爲에 대하여 特別한 處罰規定을 新設하고자 하는 것임. 數年內 一部 不法分子는 各地에서 極히 過激한 集團的, 組織的인 不法事案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른바 火焰瓶이 주된 兇器로서 使用되고 그 結果 多數의 警察官과 一般人을 殺傷케 하는 外에 各地에서 官公署, 民間施設이나 車輛의 放火 등 多大한 被害가 發生하여 社會一般에 커다란 不滿을 惹起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主眼하는 바임.

火焰瓶은 揮發油 등 引火하기 쉬운 物質을 유리병 其他 容器에 넣어 이것에 發火裝置나 點火裝置를 한 것으로서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產에 害를 加하는데 使用하는 것으로서 極히 危險한 兇器이고 正當한 용도에 쓰여질 여지는 전혀 없음. 그러나 現行 法制下에서는 이러한 火焰瓶은 爆發物取締罰則上의 爆發物에 該當되지도 아니하고 火焰瓶의 使用, 製造 또는 所持 등을 直接 處罰의 對象으로 하는 刑事罰則은 存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其他 既存의 罰則으로서도 火焰瓶을 使用하는 不法事犯을 正確히 處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와 같은 觀點에서 火焰瓶의 使用 등에 대하여 特別한 處罰規定을 設定하여 이러한 類의 不法事犯을 退治함과 더불어 社會不安을 一掃하고 法秩序의 維持에 寄與하기 위하여 提出하는 것임.

參 考 文 獻

1. 日本 警察廳編, 警察官 實務 6 法, 東京法令出版株式會社 1988.
2. 竹島入和上, 警備犯罪斗 法令(1), 東京 啓正社 1984.
3. 日本 警察廳編, 警備事案 30 年—現行 警察法 施行 30 周年 記念 特輯號, 東京 警察廳 1983.